

2026년도 부산세관 한시임기제 8호 공무원[관세] 모집 재공고

부산세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8호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부 산 세 관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¹⁾	임용직급	선발인원	채용기간 ²⁾	근무예정부서 ³⁾
관세B	한시임기제8호	1명	채용일 ~ '27.3.4.	부산세관 여행자통관과

- 1) 채용 분야별로 한 분야만 응시 가능(중복지원 불가)
- 2) 최대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 3)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

2 근무 조건

- 현업근무(교대근무)
- 근무주기: 2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
※ 예시: 근무(07:30~19:30) → 근무(07:30~19:30) → 휴무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순환근무
- 근무편성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직위는 현업부서 근무로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채용분야 및 담당예정 업무 (1개 직위, 총3명)

채용분야	임용직급 ¹⁾	선발인원	채용기간 ²⁾	담당예정 업무	근무기관 ³⁾
관세B	한시임기제 8호	1명	채용일 ~ '27. 3. 4. (주 35시간)	○ 여행자 휴대품 검사(입출국장, 차량장, 크루즈) ○ 일시수출입차량 통관 관련 업무 ○ 휴대품 반송 업무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해당 휴직자(결원) 업무 수행	부산세관 여행자통관과

- 1) '임용직급'은 휴직자 등 발생 시 임용될 직급이며,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2) '채용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휴직자 등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근무시간은 1일 7시간으로 하되, 근무형태에 따라 교대근무 및 초과근무(야간근무) 가능
 3) '근무기관'은 채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용될 기관 내 소속 부서
 ※ 채용 분야별로 한 분야만 응시 가능(중복지원 불가)

5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8.5.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제74조(정년)적용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8.5. 기준)]**

- 다음 경력 또는 학위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 '경력 요건'의 학위는 전공 무관, '학위 요건'은 직무분야 관련 전공자

채용 분야	임용직급	응시 자격	응시자격 요건
관세(B)	한시 임기제 8호	경력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①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또는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응시요건 하나만 선택**
- 상위 임용직급에 규정된 응시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직급의 응시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채용 분야별로 한 분야만 응시 가능(중복지원 불가)**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이 '경력'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학위'인 경우 무관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사업주 또는 소속직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은 경력에서 제외
- **아래 표의 인정대상 업무를 담당한 근무경력만 인정**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구분	내용
인정대상 업무	수출입통관 및 세금 납부·환급·감면 등 관세행정 관련 업무, 화물·물류 관리 업무, 국제공항만 관련 업무(X-ray 판독, 면세점, 선용품 등 공항만과 관련된 업무), 무역 관련 업무 등 관세행정(통관, 심사, 조사)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 **응시자격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공무원 경력 2년'과 '민간 경력 1년'을 합산하여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 등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인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는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직위(직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근무형태(주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발급일,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 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를 명시한 서류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제출하고(근무기관 발행 별도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된 내용 필수 기재), 근무기관별로 작성(근무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

○ 학위의 범위

- '학위'는 전공·복수전공에 대해 인정하며, 부전공·수료자에 대해서는 불인정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 표의 인정대상 학위만 인정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위

구분	내용
인정대상 학위	무역학, 국제무역학, 국제통상학, 국제물류학, 물류관세학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학과

※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학위는 졸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서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다. 우대요건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6.7.16.) 기준]

우대요건	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근무개월에 따라 차등 우대)
	자격증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경력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개월에 따라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 충족한 이후, 아래 표의 인정대상 업무를 담당한 근무경력만 인정**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구분	내용
인정대상 업무	수출입통관 및 세금 납부·환급·감면 등 관세행정 관련 업무, 화물·물류 관리 업무, 국제공항만 관련 업무(X-ray 판독, 면세점, 선용품 등 공항만과 관련된 업무), 무역 관련 업무 등 관세행정(통관, 심사, 조사)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사업주 또는 소속직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
- 근무기관별 경력을 년, 월, 일 단위로 합산, 합산경력을 역(曆)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근무기간(근무개월)에 따라 차등 우대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등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인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는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직위(직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근무형태(주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발급일,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 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를 명시한 서류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제출하고(근무기관 발행 별도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된 내용 필수 기재), 근무기관별로 작성(근무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

○ 우대요건(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다음 자격증 소지자

구 분	대상 자격증
전산 관련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 ※ 자격증은 자격증 사본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며, 복수 제출시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우대
[예]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를 모두 제출한 경우, 정보처리기사만 우대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자격증은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서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5배수 초과 응시하는 경우)	
가.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 충실도 및 표현력,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정도, 사회성 및 인성 평가
나. 직무수행능력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근무개월에 따라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세행정 등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복수 제출시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우대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제어 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4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7.6.(월) ~ 7.16.(목)	'26.7.14.(화) ~ 7.16.(목)	'26.7.30.(목)	'26.8.6.(목)	'26.8.13.(목)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공고 시 시험기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
- 면접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부산세관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 접수일시 : 2026.7.14.(화) ~ 7.16.(목)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서류 (나라일터 온라인접수 후 **우편(방문) 제출**)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 우편제출 마감일 : 2026. 7. 16.(월)
 - － 응시원서는 별지서식 제2호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출력물 가능) 부착
 - ※ 8·9호 : 5,000원 상당

※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예: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등기우편(방문) 접수 주소 : (우)48942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20 부산본부세관 4층 세관운영과 인사계 채용담당자 / 문의전화 : 051-620-6028

※ 우편 봉투 겉면에 '한시임기제 관세(B) 8호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26.7.16.)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 등으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구분	연번	제출목록	비고
공통사항 (필수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서식 제1호
	2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3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4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8호
	9	경력증명서 1부(경력요건 및 학위요건 한시6호(②)응시 시)	○ 별지서식 제9호
	10	졸업증명서(학위증) 및 최종학력증명서 1부	
	11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개별사항 (해당자)	12	우대요건 직무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9호
	13	우대요건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2번)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금액증명(1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8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최대 1년 6월 내에서 휴직자 등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주 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주 40시간	주 35시간 환산 급여(월)
2,378,300원	2,081,010원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근무시간 비례 지급
-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 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가능, 동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가입 불가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관련 분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 (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 받아 확인하여 불일치할 경우 경력 인정이 불가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채용담당자(051-620-6028)에게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관세		한시임기제 8호	1명	부산세관 여행자동관과
주요 업무		○ 수출입물품 및 여행자 휴대품 등 검사·통관 업무(입출국장, 차량장, 크루즈) ○ 일시수출입차량 통관관련업무 ○ 휴대품 반송업무,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 지식		○ 수출입통관 등 관세법 제반 지식 ○ 무역, 국제통상 등 무역 및 통상관련 지식 ○ 기타 관련 법률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응시 자격 요건	응시 요건	경력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①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관련분야 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국제기구·단체에 소속되어, 수출입통관 업무 및 세금 납부·환급·감면 등 관세행정 관련 업무, 화물·물류 관리 업무, 국제공항만 관련 업무(X-ray 판독, 면세점, 선용품 등 공항만과 관련된 업무), 무역 관련 업무 등 관세행정(통관, 심사, 조사)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관련분야 학위] 무역학, 국제무역학, 국제통상학, 국제물류학, 물류관세학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학과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 충족 이후,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구 분	대상 자격증	
		전산 관련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본문 참고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8·9호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전자수입인지 출력물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예: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직위별 응시자격 및 우대자격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9. 경력증명서 1부	○ 필수서류: 경력요건 및 학위요건 한시6호(②학사+6개월) 응시 시 ※ 「공고문 4.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필독 ※ 제출서류 12.우대요건 경력증명서 작성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10. 졸업증명서(학위증) 및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필수서류: 경력요건 및 학위요건 둘 다 제출 ※ 심사위원 제척·기피 및 학위 응시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학위요건 응시 시, 전공·복수전공은 인정, 부전공·수료자 불인정

구 분	내 용				
11.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12. 우대요건 직무분야 경력 (재직)증명서 각 1부 (별지서식 제9호) ※ 「공고문 4.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필독	○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인정되는 경력증명서 : 근무한 기관에서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자체 서식으로 발행한 경력증명서(자체 서식의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4대 보험 자격득실 증명·확인 서류만 제출 시 불인정 * 근무기관이 아닌 각종 협회 발급 경력확인서(증명서)만 제출 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직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근무형태(주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발급일,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 직무분야 경력 : 아래 인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인정대상 업무</td><td>수출입통관 및 세금 납부·환급·감면 등 관세행정 관련 업무, 화물·물류 관리 업무, 국제공항만 관련 업무(X-ray 판독, 면세점, 선용품 업무 등 공항만과 관련된 업무), 무역 관련 업무 등 관세행정(통관, 심사, 조사)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td></tr> </tbody> </table>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 "전임(주40시간 근무)"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 근무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근무기관별로 각각 작성	구분	내용	인정대상 업무	수출입통관 및 세금 납부·환급·감면 등 관세행정 관련 업무, 화물·물류 관리 업무, 국제공항만 관련 업무(X-ray 판독, 면세점, 선용품 업무 등 공항만과 관련된 업무), 무역 관련 업무 등 관세행정(통관, 심사, 조사)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구분	내용				
인정대상 업무	수출입통관 및 세금 납부·환급·감면 등 관세행정 관련 업무, 화물·물류 관리 업무, 국제공항만 관련 업무(X-ray 판독, 면세점, 선용품 업무 등 공항만과 관련된 업무), 무역 관련 업무 등 관세행정(통관, 심사, 조사)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13. 우대요건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반드시 단면으로 인쇄하여 제출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응시분야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택1)
	관세 ()	한시임기제 ()호	□경력() □학위()

연번	제 출 목 록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1호	
2	응시원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2호	
3	이력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3호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5호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6호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7호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8호	
9	경력증명서 1부(필수: 경력요건 및 학위요건 한시6호②응시 시)	○ 별지서식 제9호	
10	졸업증명서(학위증) 및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수)		
11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필수)		
12	우대요건 직무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9호	
13	우대요건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O"표시

☞ 위 순서대로 제출(단면으로 인쇄하여 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 제출)

응시원서 (원본)

부산세관장 귀하

본인은 부산세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 (원본)			
응시분야 / 임용예정직급		관세 () / 한시임기제 ()호	
응시자격(택1)		☐ 경력() ☐ 학위()	
※ 응시번호	※ 채용담당자 기재란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해당없음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원)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응시분야 / 임용예정직급		관세 () / 한시임기제 ()호	
응시자격(택1)		☐ 경력() ☐ 학위()	
※ 응시번호	※ 채용담당자 기재란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부산세관 세관운영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을(를)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 요령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① 응시분야: 공고문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 기재 [예] 관세 A, 관세 B 등
 - ② 응시자격: 공고문의 응시자격 요건을 참고하여 해당사항 택1하여 간략히 기재
[예] 한시6호(경력 요건-①) 지원 시: ☒경력(학사+1년6개월 경력)
한시8호(경력 요건-③) 지원 시: ☒경력(9급 6개월)
한시8호(학위 요건) 지원 시: ☒학위(전문대학)
 - ② 응시번호: 응시자 기재하지 않음(채용담당자 기재란)
 - ③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⑤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예: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별지서식 제3호> (예시)

이력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채용담당자 기재란	응시 분야	관세()	응시 자격	□경력(학사+6개월 경력)	성명	홍길동
					□학위()		

2. 응시자격

요건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필요	○○관세사무소	'15.01.01. ~ '15.12.31. (1년)	주임 (7급)	수출입통관	전임 (주 40시간)

여건	학교명	재학기간	전공분야	학위종류	학위취득(예정)일
학사	○○대학교	'11.03.00. ~ '15.02.00.	국제통상학	학사	'15.02.00.

※ 한시임기제6호(①학사+경력6개월) 응시 시 상단 경력란에 경력 기재

3. 우대요건

근무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관세 사무소		'16.01.01. ~ '20.06.15. (4년5월15일) *19.01.01.~19.12.31.(육아휴직)	주임 (7급)	수출입통관	전임 (주 40시간)
자격증	전산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컴퓨터활용능력1급	'10.01.01.		대한상공회의소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응시자 기재하지 않음(채용담당자 기재란)
- ② 응시분야: 공고문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 기재(예 : 관세 A)
- ③ 응시자격: 공고문의 응시자격 요건을 참고하여 해당사항 택1하여 간략히 기재
[예] 한시6호(경력 요건-①) 지원 시: ☒경력(학사+1년6개월 경력)
한시8호(경력 요건-③) 지원 시: ☒경력(9급 6개월)
한시8호(학위 요건) 지원 시: ☒학위(전문대학)

【 응시자격 】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근무기관·근무기간·직위·담당업무·근무형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담당예정인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예 : 경력 요건 중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2년의 경력은 '2.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2년의 경력은 '3.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주 근무시간)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직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직급)를 나누어 기재
- 담당업무는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상세하게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담당예정인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을 기재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해당하는 경력만 작성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 경력증명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직위(직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직급)를 나누어 기재
- 담당업무는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상세하게 필수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전산 관련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 미해당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용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분야	관세 ()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 및 성공 사례,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특기사항,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한글(hwp) 양식으로, 글자체 맑은고딕, 크기 11포인트로 작성
-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자기소개서 (계속)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2026. . . 작 성 자 : (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분야	관세 ()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이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관련 경력·실적, 직무수행 능력·방법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한글(hwp) 양식으로, 글자체 맑은고딕, 크기 11포인트로 작성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계속)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매 이내로 작성,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2026. . . 작 성 자 :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부산세관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부산세관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행정정보명
결격사유 유무 정보,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부산세관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자 제출자료 발급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세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을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세관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경력(재직) 증명서

[illegible]